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08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10조는 ‘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10조제5호와 같이 규정할 경우, ‘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어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센터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안 제10조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안 제10조제5호를 삭제함(안 제10조제5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센터의 업무) 제 9조의 센터 및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6. <신설></p>	<p>제10조(센터의 업무) 제 9조의 센터 및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u>최근 사회 동향 및 청소년 문화 분석 또는 대상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희망 진로에 관련된 교육 방향 연구 및 제시</u></p> <p>6. <u>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10조(센터의 업무)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개정안 제6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

제1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자문)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 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 육 방향성 제시</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